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조사과	과 장 최철승 사무관 전형곤	042-481-5959 042-481-8144
	12월 5일(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중소·벤처·스타트업 아이디어 무임승차행위 철퇴

- 스타트업 상품 ‘형태모방해 판매한 기업 및 대형마트에 생산·판매 중지 권고 -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행(17.7) ⇒ 조사·시정권고 권한부여 후 첫 사례 -

- 앞으로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제품 생산 및 판매중지를 포함한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아이디어 무임승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시행(17.7)에 들어갔고,
 -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사례조사(17.9~11)에 착수해 조사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

특허청은 **㈜이그니스**가 먼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게 해당상품의 생산·판매를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조치했다. 또한 해당상품을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게 판매 중지를 시정 권고했다.

이그니스는 16년 9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엄마사랑은 17년 8월부터 이그니스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 특허청은 이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치를 내렸다.
-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상품형태를 모방해 판매한 기업과, 이를 매입해 판매한 대형마트에 생산 및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 ☞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제외

- 특허청은 앞으로도 상품형태 모방행위 등에 대한 단속조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 전담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전담할 인력 3명을 충원(18.3)하고, 형태모방 신고건수 및 업계현황을 고려해 추가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18.1)도 본격 운영해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예정이다.
-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042-481-5812·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 (☎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된다.

-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비용과 노력 없이 선행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훼손하고 선행개발자의 이익에 무임승차하는 부정당한 행위”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이번 시정권고가 식품업계의 미투(Me-Too) 상품 등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형태 모방행위 뿐만 아니라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근절의지”라고 강조했다.

※ 붙임1 : 상품형태 비교

※ 붙임2 :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구체적인 판단

※ 붙임3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등 관련규정

붙임 1

상품형태 비교

선행상품
(주)이그니스 - 랩노쉬



모방상품
(주)엄마사랑 - 식사에 반하다



- 특허청은 양 제품은 용기형태, 용기에 부착된 수축라벨 디자인, 분말 형태인 내용물 등의 개별요소들 뿐만 아니라 이들 요소가 결합된 전체형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결정

<모방여부 판단내용>

- (상품형태의 범위) 양 제품은 분말형태인 대용식을 수축 라벨이 부착된 용기에 충전한 상품이며 용기, 수축라벨, 분말 내용물 등이 별도 분리가 곤란하므로 상품의 형태는 용기, 수축라벨, 내용물이 결합된 일체
- (용기형태) 병목길이, 병뚜껑의 크기 및 형상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양 제품을 대비할 경우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한 변경에 불과
- (수축라벨) 상품의 전면에 백색의 사변형을, 후면에는 물 붓는 선을 배치한 형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진해지는 유사한 색상의 그라데이션 등 수축 라벨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동일유사
- (분말 내용물) 상품을 뒤집거나 물을 혼합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내용물의 형태와 색상이 동일 유사
- (전체형태) 타인의 선행 상품형태가 없었다면 후행 상품형태가 우연히 개발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인 형태에서 미세한 차이보다 디자인의 특징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

- 한편, (주)이그니스의 ‘랩노쉬’ 출시 이전의 대용식이 지퍼백, 팩, 스틱 등의 다양한 상품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랩노쉬’ 상품 형태가 동종 상품이 가지는 통상적인 형태이거나 기능이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형태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 ‘랩노쉬’가 2016년 9월에 시제품이 출시되었으므로 상품 형태가 개발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예외조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제2조(정의)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상품주체 혼동야기)
-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영업주체 혼동야기)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저명상표 희석화)
- 라.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원산지 오인유발)
- 마.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것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수입·수출하는 행위(생산지 오인유발)
-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유발)
- 사.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등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대리인의 상표사용)
-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도메인 부정사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상품형태 모방)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7조(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①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17.>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7.>

제18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17.>

1. 제2조제1호(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